

대전지방법원 2024. 11. 19 선고 2023가단387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고A

피고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민용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손민정

변론 종결2024. 9. 24.

판결 선고2024. 11. 19.

주 문

-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24.부터 2023. 5.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9. 9. 26.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50,000,000원 상당의 중고판넬을 공급받기로 하는 물품공급설치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9. 12. 22. 원고에게 천안시 C에 있는 공장을 철거하면서 중고판넬을 공급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40,000,000원을 입금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약속한 중고판넬을 공급하지 않았고 원고는 이에 위 물품공급설치계약을 이 사건 소로써 해제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으로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송금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9. 12.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인 2023. 5. 9.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거래는 다음과 같은 평택시 D 지상 건물의 해체의 건과 천안시 동남구 C 소재의 건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거래는 종결되었다고 주장한다.

1) 피고는 2019. 9.경 원고와 사이에 평택시 D 소재 철골 건물을 해체하여 철골자재 중 빔 등 일부를 상차하여 원고가 지정한 충주시 E로 보내면, 원고가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는 계약체결 후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5,000만 원 중 500만 원만 지급한 채 2019. 10. 30.까지 지급하기로 한 4,500만 원을 입금하지 아니하여 위 철거관련 계약은 원고의 귀책사유로 해제되었다.

2) 피고는 2019. 12. 말경 사단법인 F(이하 'F'라 한다) 회장인 G으로부터 천안시 동남구 C 지상 철골건물 3동을 6,500만 원에 팔 테니 해체하여 가져가라는 제안을 받은 피고는 원고에게 C 건물이 있는 곳을 알려주었고, 원고는 그 후 천안시 동남구 C 지상 건물을 확인한 다음 H 간판이 있는 건물 250평을 사겠다"고 하면서 2019. 12. 23. I 명의로 피고의 계좌에 4,000만 원을 입금하여 피고는

2019. 12. 23. G의 처(妻)인 J의 계좌에 원고로부터 받은 금액인 4,000만 원 전액을 이체하였다.

나. 판단

원고가 피고가 제안한 평택시 D 소재 철골 건물의 철골자재 중 빔 등 일부를 인도받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천안시 동남구 C 지상 철골건물에 관하여 원고에게 단지 건물의 소재지를 알려주었다는 것에 불과하고 원고로 하여금 철골 등을 인도받게 한 것은 아닌 채 피고가 G의 처(妻)인 J의 계좌에 원고로부터 받은 금액인 4,000만 원 전액을 이체하였다는 것에 불과하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물품공급설치계약에 따른 피고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이성호